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의자
제 29 호	제 9 차	1989. 1. 20	총재 김 건

의 안 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 개정

의결사항 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, 제59조

제의취지 금년들어 통화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/4분기 이후부터는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공급이 더하여져 통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체제하에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중화 및 민간신용 공급 절제를 위하여는 기조적 유동성조절수단인 지급준비율의 인상이 필요한 바,

기존예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준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증가할 예금에 대하여만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통화증가율을 유지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36/45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"한국은행법" 제57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.

"한국은행법" 제59조

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,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

2.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

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 개정(안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(안)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제1조 (생 략)
제2조 (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)
① '한국은행법'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.
<table><tr><th>예 금 종 별</th><th>지 급 준비율</th></tr><tr><td>근로자재산형성저축
근로자주택마련저축
주 택 부 금</td><td>3.0 %</td></tr><tr><td>2년이상만기 정기예금
2년이상만기 정기적금
가 계 우 대 정기적금</td><td>7.0 %</td></tr><tr><td>기 타 예 금</td><td>10.0 %</td></tr></table>(신 설)
② 상호부금 및 양도성예금 증서발행채무는 예금지급준비금예치대상 예금채무에서 제외한다.</td><td>제1조 (현행과 같음)
제2조 (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)
① '한국은행법'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근로자재산형성저축, 근로자주택마련저축,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.0%
2. 2년이상만기정기예금, 2년이상만기정기적금,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하여는 7.0%
3. 기타예금에 대하여는 10.0%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예금채무의 1989년 1월 상반월 평균잔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는 동 증가액의 30%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
③ 상호부금 및 양도성예금 증서발행채무는 예금지급준비금보유대상 예금채무에서 제외한다.</td><td>- 호 구분
- 1989.1월 상반월을 기준으로 한계지준율 30% 적용
- 항 체하
- 용어 정비</td></tr>
</table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3조 (지급준비금의 계산) ① 각 금융기관은 매 상반월(1일~15일)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 예치대상 예금에 대한 최저 예금 지급준비금을 당해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매 하반월(16일 ~ 월말일)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예치대상예금에 대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당해월 23일부터 익월 7일까지 보유하여야 한다.	제3조 (지급준비금의 계산) ① 각 금융기관은 매 상반월(1일 ~ 15일)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 보유대상 예금에 대한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을 당해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매 하반월(16일 ~ 월말일)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보유대상 예금에 대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당해월 23일부터 익월 7일까지 보유하여야 한다.	- 용어 정비 - 용어 정비
② 지급준비금예치대상예금의 계산에 있어 차감할 수 있는 타점권의 범위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② 지급준비금보유대상예금의 계산에 있어 차감할 수 있는 타점권의 범위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- 용어 정비
제4조~제5조 (생 략)	제4조~제5조 (현 행 과 같 음)	
(신 설)	부 칙 이 규정은 1989. 5. 8 (5월 상반월 요지준 적립시)부터 시행한다.	